

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-제31호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일자 : 2006. 6.15

제출자 : 사천시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현행 규칙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읍·면장의 기구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○ 부읍·면장의 기구 설치근거 마련(안 제23조)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실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2) 입법예고 (2006. 4. 20~5. 10) 결과 제출된 의견없음

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제104회 - 총무위 부록)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(부읍·면장) 읍에는 부읍장을 두고, 면에는 부면장을 둔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설></u>	제23조(부읍·면장) 읍에는 부읍장을 두고, 면에는 부면장을 둔다.

관 련 법 령 발 취

【지방자치법】

제111조 (하부행정기구)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.

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등 통보

○ 하부행정기구 설치 승인권 폐지에 따른 조직관리지침

- 개정내용(법 제111조)

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(시도지사의 승인 폐지)

- 규정방법

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(이 법 시행당시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하부행정기구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시 반영)